

企業經營과 税金講話 3



李 文 宰

韓國税金會計研究會會長

第4講 所得稅라는 税金

Ⅳ. 勤勞所得

勤勞所得은 俸給·給料·賃金·手当·賞與·退職給與·年金 등 給與를 말한다. 요컨대 雇傭關係 또는 이와 유사한 非獨立의인 勞務의 提供에 의하여 雇傭者로부터 받는 報酬인데 現行法上 甲과 乙로 나누어 甲種은 乙種 이외의 것이며, 乙種은

(가) 外國機關 또는 駐韓國際聯合軍(美國軍을 除外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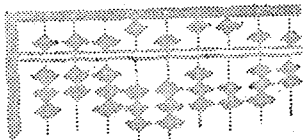
(나) 國外에 있는 外國法人 또는 外國人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 徵收義務者가 徵收할 稅額을 徵收하지 아니하고 所在不明이 된 경우의 勤勞所得 등을 말한다.

1. 勤勞所得의 計算

勤勞所得은 課稅所得범위에 속하는 소득의 收入할 金額을 課稅 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不動產所得이나 事業所得과 같이 필요경비의 공제를 아니한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稅制改革에 있어서는 勤勞控除를 若干金額 정도한다고 傳聞되고 있으나 확실한 것은 오는 9月 이후 定期國會에서 논의되는 것



을 보아야 알 수 있겠다. 그건 그렇다치고 收入할 金額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들 말하는 떡값이나 開業記念手当 등 계속성이 없는 特別名目の 支給도 甲種勤勞所得稅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1. 機密費(관공비를 포함한다). 交際費, 職務別俸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性質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給與. 다만 機密費에 있어서는 當該 事業체의 定款, 規則 기타 文書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의하여 실제로 支給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2. 辯護士, 公認會計士, 辯理士, 稅務士, 醫師 등이 계속적으로 받는 顧問料, 手当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性質의 給與.

3. 功勞金, 記念慰勞金, 開業祝賀金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勤勞手当, 家族手当, 戰時手当, 物価手当, 出納手当, 職務手当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保險会社 또는 金融機關이 그 內勤社員에게 지급하는 集金手当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給食手当, 住宅手当, 被服手当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7. 技術手当, 保險手当, 研究手当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時間外勤勞手当, 運動手当, 皆勤手当, 特別功勞金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旅費의 名目으로 支給되는 年額 또는 月定額의 給與

10. 教育機關의 後援會 또는 師親會가 지급하는 급여

11. 僻地手当, 別居手当, 海外勤勞手当 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從業員을 保險受取人으로 하여 支給하는 保險料

13. 從業員에게 食事を 제공하는 경우의 食事代

14. 從業員에게 被服을 제공하는 경우의 被服代

15. 기타 現物給與의 경우에는 支給當時의 時價에 의한 代金

이와같이 課稅所得이 되는 收入할 金額에는 실로 다양한 성질의 급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企業經營上 유의할 점은 위 第1號의 機密費에 대해서인데 기밀비가 甲種 勤勞所得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이를 지급하는 事業체가 定款이나 規則 또는 文書로서 그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않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會社가 理事會등의 決議로서 기밀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두고 이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勤勞所得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은 法人稅法에 있어서도 機密費의 取扱은 企業체가 마련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특히 고려할 바라 하겠다.

그리고 제 9號에서 보는 바와 같이 年額이나 月定額으로 支給하는 旅費도 勤勞所得으로 되기 때문에 그 취급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밖에 거듭 말해 두는것은 어떠한 명목의 지급도 勤勞者에게 귀속되는 것은 모두가 課稅所得이라는 점이다.

2. 非課稅所得

勤勞者에게 歸屬되는 모든 소득이 課稅所得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政策上의 이유에서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非課稅所得이 있는바 現行法上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服務中인 兵이 받는 給與

2. 戰時勤勞動員法の 規定에 의한 被動員者의 動員職場에서 받는 給與

3. 傷痍疾病者 또는 遺家族이 받는 年金이나 慰藉의 性質이 있는 給與.

4. 學資金

5. 기타 다음과 같은 實費辨償의 性質의 諸給與

① 法令, 條例등의 規定에 의하여 報酬를 받지 아니하는 委員등에게 出席日數에 따라 支給하는 日當 또는 手当

② 船員法 第87條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하는 食料

③ 日直料, 宿直料 또는 旅費로서 實費 辨償程度의 支給額

④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制服着用을 요하는 者에게 지급하는 制服, 制帽, 洋靴.

⑤ 勤勞基準法 第79條에 規定하는 休業補償金, 産災補償保險法 第9條 第1項 第2號에 規定하는 休業給與와 公務員年金法 또는 軍人年金法의 適用을 받는 公務員 및 軍인이 身體 精神上의 障害 또는 疾病으로 인한 休業期間 또는 職位解除 期間中에 받는 給與.

⑥ 病院, 試驗室, 銀行, 工場과 鉱山에서 勤務하는 者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用務에 종사하는 자에게 支給하는 作業服이나 그 職場에서만 착용하는 被服.

⑦ 特殊分野에 従事하는 軍인이 支給받는 航空 危險手当, 落下傘降下危險手当, 水中破壞危險手当, 潜水夫危險手当, 高压電危險手当, 爆發物危險手当, 飛行手当(甲, 乙), 非武装地帶勤務手当, 前方消所勤務手当.

⑧ 工場, 鉱山 기타 作業場에서 肉體勞動에 종사하는 勞務者가 不定期的으로 제공하는 食事 기타 飲食物의 代金.

이밖에 免除所得으로서

① 作戰任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外國에 駐屯中인 軍人 軍屬이 받는 給與

② 國外에서 勤務를 제공하고 받는 給與(다만 國家公務員 또는 地方公務員의 給與를 제외한다)

③ 遠洋漁業船舶에 乘船하는 乘務員의 給與

④ 外航船舶에 乘船하는 乘務員이 그 外國을 航行하는 期間中에 받는 給與등이 있다.

非課稅中の 學資金은 名目的인 것이 아니고 實質的인 것을 말한다. 곧 事業者가 修學中の 子女가 있는 從業員을 위하여 名목상의 獎學金이나 學資金을 지급한 때에는 이를 받는 從業員의 勤勞所得에 포함하고, 事業者가 從業員 또는 기타의 者에게 名목뿐이 아닌 學資金 또는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받은 者의 勤勞所得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반면에 이를 지급한 事業體의 필요경비로는 보지 아니 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3. 課稅所得金額의 計算

이미 말한바 있거니와 勤勞所得에 대한 課稅所得은 위에서 알아본 非課稅나 免除所得을 除外한 모든 收入할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다음 금액만은 공제한다. (곧 다음 金額을 공제한 것을

課稅標準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공제를 基礎控除라고도 한다.

(甲種)

1. 一般給與-1만원(甲種勤勞所得控除라 한다)

2. 年金給與額에서 1만원을 공제한 금액과 다시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前職 大統領處遇에 關한 法律, 公務員年金法 또는 軍人年金法의 規定에 의한 退職年金 또는 退役年金을 말한다)

3. 退職給與-給與額에서 10만원을 공제한 金額과 다시 다음에 제기하는 金額을 공제한 金額

① 一時退職給與(前職大統領禮遇에 關한 法律, 公務員年金法 또는 軍人年金法의 規定에 의한 退職一時金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75%에 상당하는 금액

② 기타 退職給與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金額

(乙種)

乙種은 各期中(3個月)의 總 給與額에서 3만원을 공제하고 退職給與는 甲種과 동일하다.

다음으로 賞與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月平均賞與와 그 支給對象 期間中の 賞與 이외의 月平均 給與額을 합제한 금액에서 甲種勤勞所得控除(1만원)를 한 금액에 稅率을 곱하여 산출한 月稅額을 다시 그 支給對象期間의 月數로 곱하여 계산한 總稅額에서 이미 결정된 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前號의 月平均賞與는 그 賞與를 支給對象期間의 月數로 除하여 계산한다.

위와같은 計算方法을 算式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其他退職給與〉

$$\left(\frac{\text{退職給與額} \times \frac{50}{100}}{\text{在職年數}} \right) \times \text{稅率} \times \text{在職年數} = \text{稅額}$$

(이 경우에 年未滿의 月數는 年으로 한다)

〈賞與〉

$$\left\{ (\text{月平均賞與額} + \text{支給對象期間中の 賞與以外の 月平均給與額} - 1\text{만원}) \times \text{稅率} \times \text{支給對象期間의 月數} \right\} - \text{當該期間의 既決定稅額(加算稅除外)} = \text{稅額}$$

4. 稅率

甲種勤勞所得稅의 稅率은 다음과 같다.

또한 甲勤稅는 一般源泉徵收義務이므로 지급하는 者는 그 누구이고 간에 源泉徵收를 하여 翌月 10日 까지 所管稅務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1 萬圓以下의 金額	7.7%
1 萬圓초과	9.9%
2 萬圓 "	12.1%
3 萬圓 "	15.4%
6 萬圓 "	22.0%
8 萬圓 "	29.7%
10 萬圓 "	37.4%
15 萬圓 "	46.2%
20 萬圓 "	55 %

日傭人夫(일정한 雇傭主에게 雇傭되지 아니한者)에 대하여는 700圓을 공제하고 稅率은 일률적으로 7.7%를 적용한다.

〈事例〉

1. A氏는 집 修理를 하고 5日間에 걸쳐 人夫 5名에 대하여 日當 1,500圓씩을 지급한 바 있다. 이 경우의 甲勤稅는 얼마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1,500-700) \times 7.7\% = 61\text{圓} \dots 1人當 1日稅額$$

$$61\text{圓} \times 5日 \times 5名 = 1,525\text{圓} \dots 納付할 總稅額$$

2. K君은 每月 3萬圓의 月給을 받고 있다. 따라서 每月의 甲勤稅는 다음과 같다.

$$30,000 - 10,000 (\text{공제액}) = 20,000$$

$$\left. \begin{array}{l} 10,000 \times 7.7\% = 770 \\ 10,000 \times 9.9\% = 990 \end{array} \right\} = 1,760\text{圓}$$

곧 每月 1,760圓을 源泉徵收에 의하여 企業主가 납부한다.

3. 그런데 K君에게 6個月間의 賞與金으로서 6萬圓이支給되었다. 이 때에 賞與에 대한 甲勤稅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이를 源泉徵收하면 된다.

$$60,000 \div 6月 = 10,000 \dots 月平均賞與$$

$$(月平均賞與 10,000 + 月平均給與 30,000)$$

$$基礎控除 10,000 = 30,000$$

$$10,000 \times 7.7\% = 770$$

$$10,000 \times 9.9\% = 990$$

$$10,000 \times 12.1\% = 1,210$$

$$2,970\text{圓}$$

$$(2,970 \times 6月) - (既納付稅額 1,760 \times 6月) = 7,260\text{圓}$$

곧 賞與 6萬圓에 대하여 납부할 稅額은 7,260圓이다.

4. 金課長은 3年 3個月 勤續하고 1百萬圓의 退職金을支給받았다. 이 경우 납부하는 稅액은 다음과 같다.

$$(1,000,000 \times \frac{50}{100}) - 100,000 = 400,000$$

$$400,000 \div 4年 = 100,000$$

$$10,000 \times 7.7\% = 770$$

$$10,000 \times 9.9\% = 990$$

$$10,000 \times 12.1\% = 1,210$$

$$30,000 \times 15.4\% = 4,620$$

$$20,000 \times 22\% = 4,400$$

$$20,000 \times 29.7\% = 5,940$$

$$17,930$$

$$17,930 \times 4年 = 71,720 \dots 納付稅額$$

3年 3個月 勤續하였으므로 年未滿을 切上하여 4年으로 계산하였으며 따라서 金課長에 대한 退職給與所得稅는 71,720圓이 된다.

지금까지 勤勞所得稅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稅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복잡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많은 家庭에서 人夫를 雇傭하고 日當을支給할 때 支給額에서 700圓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7.7%를 곱하여 源泉徵收하고 이를 翌月 10日까지 稅務署에 納付하여야 하는데 과연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분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俸給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俸給이외에 食事代나 物品代는 물론各種手當등이 포함된다는 것도 알았다.

各者가 잘 알아서 錯誤없는 納稅 특히 制約的인 規定은 事前에 그에 맞는 對策을 세워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